

## ◎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-82호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4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###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정('99년)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·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, 엄격한 제재규정,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1) 「외국환거래법」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(예: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) 완화
- 2) 외환제도 운영, 법령해석·적용에 대한 업계·학계·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‘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’ 신설
- 3)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‘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’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
- 4)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,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  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### 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 : 외환제도과, 전화: (044)215-4753, 팩스: (044)215-4819, 이메일 주소: kimyj1011@korea.kr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 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
- 전자우편 : kimyj1011@korea.kr
- 팩스 : 044-215-4819

### 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(전화 044-215-4753, 팩스 044-215-48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